

24.1.07
7/1/07 (017. 212u etc.
 1/2 1075m 24.1.
 Follow up to 2000 hrs.

- 7/24
Follow up to 2000 hb.

J. H. Peace.

5) 재정위원회(위원장: 김혜원)

- 재정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안 마련: 정대협과 공동모금계획: 별첨자료(1)
- 수익사업을 위한 송화가루 판매 중(1개 30,000원)
- 회계보고(2000. 3)
- 2000년법정 프로젝트 추가신청

Evangelisches Missioneswerk in Südwest deutschland
MISERIOR Asienreferat
Bröt für Welt

6) 학생법정 : 별첨자료(2)

- 전체 기획안 완성(2000년 4월 28-29일 양일간 이화여대 중강당)
- 본법정 시나리오 초안 완성
(1회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직접 가해자와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2회기: 전범자 천황제의 죄책과 처벌을 중심으로, 3회기: 피해자 할머니의 침묵 50년)
- 공개세미나 준비중(2000. 4월 15일)
- 조직화를 위한 1차 전략회의 진행(2000. 3월 15일)
- 유네스코내 협력동아리로 선정(2000. 3월 22일)
- 일본학생 사무국: 학생법정 참가단 모집중

7) 사무국(총무: 양미강)

- 상해 국제실행위원회 준비: 각국 검사단 모임 내용 확인, 실행위원회 안전 확정 및 각국 확인작업 등
- 할머니 증언 데이터 베이스화 작업: 항목 선정 및 입력작업

2. 국제실행위원회 보고

1) 각국 실행위원회 상황

북한: 2000년법정 적극 협력 약속, 검사단을 확정하기로 함.

일본: 히로히토 팀을 구성하여 천황 히로히토의 책임을 묻기 위한 히로히토 팀을 구성. 검사단 모임을 10명으로 구성(국제법학자, 역사학자 등), 일본검사를 티나 돌고플 대신에 다른 사람으로 확정

필리핀: 필리핀 준비위원회구성과 엘레나콘다를 팀장으로 한 검사단을 구성(6명, 국제법학자, 역사학자, 여성전문가 등)

대만: 검사 확정 중

중국: 검사 확정 중

2) 판사단 교섭 상황

II. 안건

1) 한국 기소장 작성을 위한 워킹

2) 상해 국제실행위원회 안건 논의

- 이전에 제안한 안건: 공통의 포스터 선정, 국제홍보 전략 논의, 모금 논의
- 새로 제안할 안건: 문화행사(개막식, 폐막식), 별도 홍보부스 설치 및 내용, 사무국 역할 확정(사무국 일원화)

3) 일본에서 보내온 현장 초안 및 일본기소장에 대한 의견 검토: 별첨자료(3)

4) 상해 국제실행위원회에 양미강 총무 참석의 건

5) 기타

〈별첨자료1〉

2000년법정과 정대협 운동 재정마련을 위한 재정위원회(안)

제안자: 유춘자(정대협 재정위원장), 김혜원(2000년법정 재정위원장)

- * 2000년법정과 정대협 공동으로 재정마련을 한다.
- * 8.15를 중심으로 2개월간 집중적으로 모금을 한다.
- * 실행위원과 재정위원이 공동으로 모금에 참여한다.

1. 재정위원회 구성

- 공동대표 1인, 정대협 재정위원장(유춘자), 2000년법정 재정위원장(김혜원)
- 각 분야의 재정위원 10여명: 기독교 및 재계
- 협찬이나 후원기업을 명시한 후원회원증을 제작하여 모금

2. 총모금액

1) 국내후원금 5000만원(정대협 2000만원, 2000년법정 3000만원)

- 국내광고 2800만원(기업협찬, ARS)
- 모금 2200만원 : 회원단체 200만원(20개×10만원),
실행위원 및 재정위원 분담금 2000만원(20명×100만원)
100만원×5명=500만원, 50만원×10명=500만원, 10만원×50명=500만원
5만원×50명=250만원, 1만원×250명=250만원

2) 해외후원금 7500만원(정대협 3500만원, 2000년법정 4000만원)

3) 수익사업 3500만원(정대협 1500만원, 2000년법정 2000만원)

- 송화가루 판매 1000만원(1000개 목표, 3만원): 교회, 단체, 여협, 중앙부인회 등, 자체 유인물 제작, 재정위원 공동 명함 제작
- 기념품 판매 1000만원(천 달러, 영수증 함, 버튼판매, 티셔츠, 시장주머니, 종이공예)
- 이벤트 구성 1500만원(일일찻집·일일호프, 바자회, 문화행사 중)

4) 국내외 프로젝트 1억 5천만원(2000년법정)

- 공공보조금 1억 2천만원(정부나 기업에게)
- 국내외 프로젝트 3000만원(독일 EKD, Goldrausch, Heinrich Bell, 미국 Global Fund for Women, UMC 요청)

〈별첨자료2〉 학생법정 준비위원회

1. 전체일정

-학생법정 일정: 2000년 4월 28(금)-29(토)일(양일간)

2000년 4월 30일: 역사기행단(한일 대학생)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중강당

-전체규모: 200명

시간/날짜	4월 28일(금)	4월 29일(토)
오전	17:00-개막식(다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말한다.) 18:30~19:00-휴식(간단한 먹거리 판매)	10:00 본법정 진행 1회기(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직접적 가해자와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2회기(전범자 천황제) 12:00 점심식사 13:00 3회기(피해자들의 50년간의 침묵) 14:30 판결
오후	19:00~20:30개막연극공연(돌격 천황하시품 1호)	폐막식 1부(대동마당) 15:00 할머니와 어울림의 마당 폐막식 2부(참가 단위별 평가 및 결의) 16:30 결의의 시간(참가자 성명서 낭독)
상설행사	상설행사 (4월 26일~29일까지 이대 일대) 여성역사의 거리(위안소 설치, 역사 및 활동사진, 참가 학교별 홍보 부스: 학생법정 행사장 일대) 여성의 역사쓰기(핸드페인팅, 할머니께 편지쓰기, 일일찾집) 영상물 상영(이대생들이 많이 다니는 문화관을 중심으로 설치)	

한국과 일본학생이 함께 떠나는 역사기행 (역사기행단을 모집합니다: 법정 참가자중에서 참가단을 모집합니다.)	
-테마 1: 한국과 일본의 미청산 과제: 역사를 중심으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코스: 나눔의집, 서대문형무소, 독립기념관 방문
-테마 2: 여성운동의 역사: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현재적 의미	코스: 수요시위, 금요시위, 동두천(소요산 등반), 여성단체 방문
*위 일정은 일본측 참가단의 체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준비단 구성

-새내기준비단(10명: 학생법정 자원봉사단 및 개막식 일부 프로그램 진행)

-학생법정 준비위(개막식 및 폐막식: 문예분과 서울여대·이화여대, 본법정: 법률분과 성신여대·고려대·서울대, 상설마당: 흥대를 중심으로)

3. 부문별 준비

-학생법정 시나리오(1차안 완성)

-전체 기획안 완료(양일간 행사에 대한 시나리오 및 참여단위 섭외중)

✓-공개세미나 준비(2000. 4월 15일, 이화여자대학교)

*주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한일간의 역사청산과 전시중 여성폭력과 피해자

5m 45s. 22.

할머님을 중심으로 3주제로 1팀 주제발표와 2-3개 단위 토론자로 참가하여 약 4시간 정도 진행

-새내기 준비단과 상설행사 준비단 가동(3월 마지막주)

-일본측 사무국:

*천황제에 대한 일본내 의식조사(학생법정 본법정에서 2회기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함. 현재 일본은 2팀으로 나누어 천황제 의식조사와 자료수집을 진행하고 있음.)

*일본참가단 조직화: 일본 바우넷에서 항공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함. 4월에 일본이 개강이고 학생법정이 끝나는 다음주가 golden week여서 학생법정 참가후 며칠간 한국에 머무를 예정(역사와 여성으로 테마방문을 진행)

-지방학생 조직화: 숙소를 마련하여 희망하는 서울/경기권 참가자와 일본학생, 지방학생들이 머무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함. 적극적으로 지방학교 조직화(부산/대구/광주/대전을 중심으로,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미 조직화에 들어갔음.)

4. 홍보 및 제정

-홍보

*학교별 일상 및 대중사업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성노예전범 학생법정 소개

*2차례의 포스터(공개세미나와 본법정)와 2차례의 브로셔를 제작하고 학생법정 백서를 만들기로 함

*전대기련, 전교련, 전방련을 중심으로 학생법정 소개를 의뢰

*학생법정 성사를 기원하는 종이학을 접고, 조각보, 조각띠, 조각그림을 그려 학생법정 당일날 구조물을 만들자고 제안함

-조직화(본법정: 200명)

#주최단위 조직화 목표: 70명

*서울/경기권 여학생운동(총여학생회, 학회, 소모임, 각종의 연대모임등)단위

#한일포럼 및 법대: 40명

*법학과(국제법 학회를 중심으로: 고려대 법대 9월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모의재판 진행)

*역사학회, 한일학생포럼 및 한일연대회의

#여성화 강의 수강생: 50명

*이화여대와 서울대, 한양대등 한국위원회 소속: 교수님의 협조를 얻어 여성화 수업에 학생법정 소개(성공회대 '성과사회' 수업에 학생법정 참가를 교안으로 이미 섭외하였음.)

#지방단위(부산, 대구, 광주, 대전): 40명

*지방단위는 전국여대생대표자를 협의회를 중심으로 진행.

-제정

총금액: 700만원

재정확보: 유네스코 100만원, 일일호프 및 이벤트 사업모금 100만원, 기업스폰서: 300만원, 2000법정(실행위원 및 한국위원회 포함) 200만원

200명 22.

-자료집 발간비: 70만원 (1000부 50p 분량)

-행사준비비: 200만원

*무대셋팅 및 선전비: 100만원

*영상자료 제작비: 50만원 (본법정 및 개막식에 사용될 영상물)

*상설행사 운영비: 50만원 (구조물 및 기타 물건 구입)

-홍보비: 100만원

*2차례 포스터 제작비: 70만원

*브로셔 및 각종 홍보전단 제작비: 30만원

-공개세미나: 50만원

*발제자 섭외비: 30만원

*행사비: 10만원

*자료집 발간비: 10만원

-일본측 참가자와 함께하는 일정 소요비: 100만원

-학생법정 운영비: 130만원 (우편물 발송 및 교통비등 각종 잡비)

-예비비: 50만원

여성국제전범법정 헌장초안

일한양안의 주된 차이점과 기소장작성·검찰단결성을 위한 회합(3월 3일)에 논의된 점

전문- 내용에 그다지 차이는 없지만, 문장의 스타일이 일본안은 격조가 중요시된 선언문적인 것으로 되었었지만 한국안은 유엔문서의 형태를 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 할것인가는 각국이 번역할 때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국안은 冒頭에 「국제실행위원회가...구성된다」라고 있어서, 사무적이고 전문으로서의 風格에는 부족하다. 일본안은 국제실행위원회가 마지막부분에 있다.

-한국안은 「일본군성노예제」를 먼저 문제로하고 있는데, 전시성폭력의 보편성과 여성국제전범법정의 국제성을 생각한다면 일본안처럼 20세기가 전쟁과 폭력에 가득차 있었다고 쓰는 것이 헌장의 전문으로는 적당하지 않을까

-한국안은 식민지 지배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타당하다

-한국안은 국제인권문서에 대한 부분이 생략되어, 여성의 인권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좋을까

-한국안은 권위의 기반으로서, 국제법, 인간의 양심, 인간성, 젠더-정의를 들고 있는데 일본안은 국제인권으로서 받아드려져 있는 여성의 인권, 국제법, 젠더-정의를 들고있다. 인간의 양심, 인간성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지 어떨지

본문 양안은 전체적으로 순서가 조금 다를뿐이고, 제 16조 협력이라는 것이 더해져있는 이외에 내용에 그다지 큰 상이점은 없다. 그 밖의 작은 상이점과 그것에 대한 일본측 법률가등으로부터 나온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제 4조(일본안은 제 5조) 국가책임 일본안의 제 5조2항 일본이외의 諸국가의 책임이 한국안에는 빠져 있다. 이것을 넣는 것은 이전에 합의되었었는데, 한국측에서 생각이 변한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5조(일본안은 제6조)시간적범위에 시작이 없고, 현재까지라고만 되어 있다. 일본안은 「1931년부터」와 「위안소제도」가 시작되었던 해부터라고 쓰여있다. 시간적범위라고 할 이상 시작을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제9조(일본안 제12조)증거에 대하여, 일본안은 「법정」은 증거를 수리,라고 있지만 한국안은 「재판관이 증거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법정」이 수리한다고 하는 것이 한정적이지 않고 넓은 것이 아닐까

-제12조(일본안 제 11조)에 「공정하고 신속한」심리로 되어있는데, 일본안에는 없다. 피고·부제의 법정이므로 「공정한」이라고는 반드시 말 할 수 없기 때문에 넣지않는 편이 좋다고 한 이유였다. 검사 해 볼 여지가 있다.

-제 13조(일본안 同)에, 피고 또는 그 대리인에 출정이나 증언, 증거제출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정」을 방해할 의도로 변호사 등이 대리인이라고 하며 출정하는 온 경우법정을 열수 없는 가능성마저 있다, 기타 개책으로서 법정이 요청했던 피고 또는 그 대리인이라는 식으로 한정해서 그 조문을 남기면 어떨까

-제 14조(일본안 同)에, 법정은 기소장작성이나 심리단계에서의 피해자, 피해단체의 참가

를 재촉하고 있지만, 이것이 일본안에는 없다. 이것을 넣는 것이 좋겠다.

-제15조(일본안 同)구제처치생명에 대해 일본안에는 「유죄라고 확인된」 개인이라고 되어 있다. 어느 쪽이 더 적합할까

-제16조(일본안에는 없음.) 「법정」 현장에 이것을 넣는 것이 적당한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측에서는 강하게 넣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

今後の 대응

최종적으로 각국의 합의를 얻기 위하여, 상해회의 전에 각국에 일한양안을 보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